

---

#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관련 주요 발표문 모음

---

- 3.10.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1차 논평 발표
  -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 3.17.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 성명 발표
  -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과 무단 파기로부터 구하라」
- 3.2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2차 논평 발표
  -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4.17.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3차 논평 발표
  -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무단폐기 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2017년 3월 10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종료’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권위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은 초유의 상황을 맞아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금번 사건을 통하여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금번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중요 증거로서 철저하게 관리되기를 국민 모두가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대통령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 기록이며 대통령의 업무활동 전모를 설명해주는 기록이다. 대통령기록의 관리 현황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척도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비서실 등 그 보좌기관의 기록은 금번 사건의 중요 증거이다.

대통령 당선 시점에서부터 파면에 이르는 오늘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이 관리 대상이다. 결재문서뿐만이 아니라 전

화통화기록, 출입기록 등이 망라되어야 하고, 전자기록과 비(非)전자기록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이들 기록은 한 건도 청와대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무단 폐기되어서도 안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폐기가 있었다면 그 또한 불법 폐기이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오늘 이후에는 합법적 폐기란 있을 수 없다. 오늘 이후의 폐기는 모두 불법 폐기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와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단 은닉과 유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 등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 등은 오늘 시점 상태 그대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지해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대통령 기록의 불법유출과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을 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둘째, 즉각 이관 준비에 착수하여 조속히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 등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이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대통령기록물법은 규정하고 있다. 비상상황이다.

차질 없고 신속한 이관 준비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이관 지원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금번에 이관되는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임은 물론 수사의 증거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진본성 유지 등 법률이 정한 모든 이관조치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하며,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행위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정’은 의무·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므로, 지정하지 않고 이관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에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완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시점 이후에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지정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임의조항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 행위를 한다면 이는 탈법행위이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6가지 사유는 대통령 본인이 아닌 그 누구도 그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입법취지를 응변한다.

넷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하여 국가기록원과 국회는 적극 나서서 법률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의 책임이 크다.

특히, 권위시 대통령기록물지정에 대한 조항이 미비한 점이 정쟁의 소재로 악용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을 현상태 그대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신속히 특별법 제정이나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권위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주체를 정해야 한다. 법률 유권해석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행위해야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일시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유보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전히 필요하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불법 유출되거나 무단 폐기되는 상황을 경계한다. 일단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기록물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공공기록과 대통령기록을 적법하게 생산·관리하고,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관리 전문가집단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며, 대통령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확인하고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과 무단 파기로부터 구하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대통령이 '임기종료'로 청와대를 떠난 후 청와대에 남아 있는 그리고 남아 있어야 할 대통령기록물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중요한 국정운영기록으로 현재 인수위원회 없이 후속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차기 정부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파면 국면이 아닌 정상적인 대통령 업무의 인수인계 상황이라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협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제정 당시 정상적인 직무 수행 상황을 가정하여 대통령 기록의 이관 등 관리절차를 입법화 하였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예외적인 상황은 입법 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이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은 단 한건의 누락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 파면 국면에서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이 무단 유출되거나 파기되는 일 없이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라.**

정상적인 인수인계 상황에서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아닌 만큼, 기존의 절차와 동일하게 대통령지정 기록물 지정과 이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선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의 취지도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 활동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지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는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유출, 파기나 훼손 등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을 봉인하는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현재 상태 그대로 봉인하고 폐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게 확보하라.

**둘째,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추진을 멈추고, 신속히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유출과 파기, 훼손 등의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감시 및 감독하라.**

3월 15일 검찰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피의자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였던 비서관과 경호실 또한 조사 대상이다. 그러므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을 도와 신속히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적 파기·훼손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라. 대통령기록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연후에 대통령기록관은 절차에 따라 이관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이 기록을 봉인하여 안전하게 확보하는데 협력하라.**

검찰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중요한 증거 기록일 수 있는 관련자들의 기록을 반

드시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오늘과 미래의 한국인에게 전승해야할 역사문화유산인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검찰은 봉인한 기록을 법정 증거로 이용하고, 대통령기록관은 역사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거듭 확인해두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국정 핵심기록인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여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은폐하거나 후손에게 물려줄 이 시대의 역사를 지워버린다면, 그 책임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가기록원장 이상진, 대통령기록관장 이재준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17일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하였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

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의 유출 및 폐기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것이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임기종료를 맞아 불법 유출과 불법 폐기, 그리고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우려하고 반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종료로부터 12일째를 맞이하여, 우리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권한은 도외시하고 책임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가기록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기록에 대한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행하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3월 13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 무단과기 및 유출 금지 등 준수 안내’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수동적인 부탁만 하였다.



---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우선했어야 할 조치는 형식적인 공문 발송이 아니라, 기록의 유출 및 폐기를 막기 위한 국가기록원장 명의의 “박근혜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였다.

이미 2013년 국가기록원은 모든 행정기관을 상대로, 과거사 관련 기록의 폐기를 막기 위해 ‘기록 자체폐기 동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금번 사태는 2013년 보다 무단폐기, 유출, 미등록 등 더욱 심각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기록원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 대하여 ‘기록 자체폐기 동결’을 선언하고, 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적극 감독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 이관에 임하는 자세를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

3월 13일 대통령기록관의 이관 추진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이 6개반 36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청와대에 파견되어 이관을 추진하는 인원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통령기록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이관을 받는 주체는 대통령기록관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이다. 국가기록원이 이관을 받고,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 이관이 대통령기록관 차원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장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법률이 정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의무를 다하고, 전례 없는 상황에서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총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비서실 등은 불법 유출, 불법 폐기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라.

‘NSC 회의 자료, 국정원 및 경찰의 정보보고 문서 등 주요 기밀 자료를 등록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이 문서파쇄기를 다량 구입하여 무단폐기가 의심된다.’ 는 등의 기록물 불법 폐기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 그간 생산한 기록에 대한 폐기 등의 권한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의 마지막 남은 의무는 국가기록원이 모든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이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뿐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전반이 비상상황을 맞이한 이때,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22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무단폐기 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오늘 4월 17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본격 이관을 개시하여 이송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 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유출하거나 무단 폐기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4월 9일 jtbc는 특검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 ‘불법유출 되고 무단폐기 되었다’ 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첫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문서를 불법유출하여 무단폐기 했다’ 고 한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딸이 김 비서실장의 집으로부터 상자를 빼돌리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김 전 비서실장 딸의 집을 찾아갔더니, 김 비서실장의 딸이 청와대 직인이 찍힌 문서를 찢어서 변기통에 넣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특검의 수사보고서에 증거인멸 행위로 기재되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둘째,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과일이 스포츠영재센터 사무실로 불법 유출 되고 무단폐기 되었다’ 고 한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실 책상 밑에 숨겨져 있는 비밀 금고를 찾아냈는데, 그 안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인사과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무단 폐기 행위는 특검의 3월 6일자 수사결과 발표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범죄로 명기된 것이 없었다.

대통령기록물법 소관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위의 불법행위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 조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와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단 은닉과 유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이재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징역, 벌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다” 며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위의 두 사례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이관과 관련하여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지금 이 시점에도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막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에서 문서파쇄기 26대를 구입한 것에서부터 의혹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제라도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준비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의한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4월 17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